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살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5.27(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 6. 21(금)

다. 상정일자 : 2013. 6. 21(금)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 이장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안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이 직무를 통해 습득한 주민들의 공적장부와 기록·통계,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공무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방지 강화

정책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기타 변경된 용어의 개정 및 띄어쓰기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역안에서의 면장 업무중”을 “구역 안에서의 면장 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지역”을 “타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유지)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를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공부나”를 “공적 장부나”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